

##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2
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6년 3월 23일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2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일준, 임현주,  
정윤주

## 1. 제안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조문 및 서식 표기, 법령 인용 방식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와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6조)
- 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안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40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6. 3. 27. ~ 2026. 4. 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을 “경력경쟁임용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전문경력관 규

정」 제6조제1호”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등록공고일로”를 “등록공고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을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거”를 “「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u></p>	<p>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u>----- ----- ----- ----- -----.</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u>----- ----- ----- ----- ----- ----- <u>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연령) <u>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u></p>	<p>제9조(응시연령) <u>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u></p>